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전관(주) 직장이 야유회행사에 참석하여 등산중 갑자기 쓰러져 후송하였으나 “뇌졸중(뇌출혈)”으로 사망한 경우

(89-228호 '89. 7. 18. 취소)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장○○

주소:경남 울주군 삼남면

원처분청: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 자

성명:상 동

피재근로자

성명:김○○

주소:경남 울주군 삼남면

소속:○○전관(주)

주 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89. 1. 14.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장○○(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89. 1. 14.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보험법”이라 한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재근로자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전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88. 10. 30. 야유회행사로 시행한 신불산 등산중 갑자기 쓰러져 동광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 도착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원처분청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던바 원처분청에서는 피재자가 참석한 야유회는 연례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사가 아니며 사무직원 총 17명중 희생자에 한하여 9명만이 참가하였고 가사 사유가 있는 자는 불참한 점 등으로 보아 행사참가가 사업주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되어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외 재해로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심사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원처분청 의견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고 피해자는 발브직 직장으로서는 생산 및 노무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피해되기 1년 전부터 1개월에 1번 정도 쉬고 21:30까지 야간근무를 계속하므로써 정신적·육체적으로 과로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사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89. 6. 장○○)
2. 원처분청 의견서(1989. 6. 7.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3. 심사관 결정서 사본(1989. 3. 31. 홍○○)
4.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1989. 1. 4. 장○○)
5. 유족 및 장의비 사정서 사본(1989. 1.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6. 사체검안서 사본(1988. 10. 31. 가락병원장)
7. 재해조사 복명서 사본(1989. 12. 15. 김○○)
8. 문답서 사본(1988. 12. 14. 이○○)
9. 건강진단 개인표 사본(1988. 5. 18. 마산고려병원장)
10. 자술서(1988. 12. 김○○, 장○○, 김○○)
11. 업무연락부 사본(1988. 10. 11 ○○전관주식회사 공장장)
12. 품의서 사본(1988. 10. 인사부장)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의 쟁점을 심리하건데, 피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해자는 야유회행사 일환으로 시행한 신불산 등산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는바 동 야유회행사의 인사부 품의서를 보면 추계 야유회행사가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별로 실시하고 근로자 1인당 3,000원씩 전 근로자에게 야유회 지원비 명목으로 지불되었음이 확인되고, 1988. 10. 22과 23일 대부분 부서가 실시하였으나 생산 2과 사무직

근로자만 1988. 10. 30. 실시하였는바 인사부 노무담당자 김○○의 1988. 12. 22.자 진술에 의하면 부서단위의 화합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기때문에 부서업무형편상 1988. 10. 22. 및 23일에 실시치 못한 경우는 부서장 재량에 의해 전, 후 휴일에 실시할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생산 2과 품의서에 의하면 1988. 10. 30. 신불산으로 소요경비 근로자 1인당 3,000원으로 등산할 것으로 계획생산부장 재가를 얻어 시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의학적 소견상 출혈성 소인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회사에서 주관 시행한 추계야유회에 참석중 뇌졸중(뇌출혈)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해자의 사망을 업무의 재해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